

1. 개정이유

국가기본도 지정, 지명 결정절차의 간소화, 측량업 민원접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18936호, 2022. 6. 10. 개정, 2023. 6.11. 시행)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필요

또한, 현행 부동산종합공부는 토지·건물 정보만 서비스 중으로, 소유권 표시사항까지 확대·서비스하여 부동산종합공부 만으로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민원 편의제고

2. 주요내용

가. 국가기본도 지정 기준(제15조)

- 법률에서 기본도를 국가기본도로 명칭을 정하고, 국가기본도 지정기준을 부령에 정하도록 하여 지정기준 명시

나. 지명 결정절차 간소화(제99조부터 제99조의3)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 결정 요청하는 방법 및 요청서식 제정
- 지명 결정사항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재심의 청구 방법 등

다. 부동산종합공부 증명서에 소유권변동에 관한 등기사항 추가표시(제71호의2 내지 4 서식)

라. 기타 용어수정 및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 등 경미한 사항 변경 (제49조, 제72조, 제106조, 제10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 제목 “(기본도의 지정)”을 “(국가기본도의 지정)”으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을 “(측량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를 “법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제72조의 제4호중 “부동산등기부 등본”을 “부동산등기부”로 한다.

제99조의 제목 “(지명위원회의 보고)”를 “(지명의 제정·변경·폐지 등 보고)”로 한다.

제99조의2 및 제9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9조의2(지명 결정 요청) ① 영 제9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영 제95조의2제1항제5호를 제외한다)
3. 지명 조정 의견서 1부(지명 조정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영 제9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제99조의3(지명 재심의 청구)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의 재심의 청구서에 청구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 중 “법 제93조제5항”을 “법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제10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42호서식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를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4항”으로 한다.

별지 제71호의2서식 부터 별지 제71호의4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86호의2서식 및 별지 제86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93호서식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5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3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 표시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소유자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관리자) 주소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역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 / 무							
개별공시지가 연혁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소재지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	--	--	--	--	--	--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토지 표시 연혁							
----------	--	--	--	--	--	--	--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토지 소유자 연혁					
-----------	--	--	--	--	--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기원인일자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장번호		건축물유무	
-----	--	-------	--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	---------------	--------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	건축물유무	
소재지				

안 내 사 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 의 사 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췌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3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관련 필지가 다수일 경우 별도 발급)						건축물 표시 (*표시 항목이 총괄일 경우 합계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개별공시지가 (원/㎡)		* 대지면적(㎡)		*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 건축면적(㎡)		주구조		
							* 연면적(㎡)		지붕		
							* 건폐율(%)		높이		
							* 용적율(%)		층수(지상/지하)		
							* 건물수		* 부속건물(동/㎡)		
							* 허가일자		* 가구/세대/호		
							* 착공일자		* 주차 대수		
							* 사용승인일자		* 승강기		
토지, 건축물 소유자 현황 (집합건물일 경우 건축물 소유자는 기재하지 않음, 토지는 건축물의 대표지번을 기준으로 작성됨)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관리자) 주소					
토지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토지)											
유/무(건축물)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작인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illegible]

토지 소유자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대표자(관리자) 주소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변동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토지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기원인일자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가격 연혁 (개별주택가격의 경우 일반건축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만 표시)											
개별주택가격 (원)	기준일자										
	주택가격										
대표지번 개별공시지가 (원/㎡)	기준일자										
	공시지가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건축물 현황도면 [배치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	--	-------	--

고유번호	
소재지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	---------------	--------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건축물)	건축물 명칭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대장유형

안내사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체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4서식]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 표시 (대지권 비율)								1동 건축물 표시					
구분	법정동	지번	지목	면적(㎡)	대지권 비율	개별공시지가 (원/㎡)		* 연면적(㎡)		* 주용도			
						기준일자	공시지가	* 부속건물(동/㎡)		주구조			
									층수(지상/지하)		* 사용승인일자		
								건축물 표시 (전유/공용 부분)					
								주/부	전유/공용	층별	구조	용도	면적(㎡)
토지(대지권), 건축물 소유자 현황													
구분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대표자(관리자) 주소			
대지권													
건축물													
등기 특정 권리사항 (등기기록의 권리정보 중 일부 특정권리의 유무만 기재 한 것임. 기준시점 : 0000년/00월/00일 00시:00분)													
구분	소유권		용익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권 (저당권, 근저당권, 질권, 근질권)		기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 가등기, 환매특약)						
유/무													
토지이용 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제4항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				

이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특별자치시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경제자유구역청장

직인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illegible]

토지(대지권) 공유 현황				건축물 소유자 공유 현황			
변동일자	변동원인	성명 또는 명칭	등록번호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지분	주소
등기원인일자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지분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대표자(관리자) 주소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 표시 연혁				건축물 전유 변동 연혁		
지목	면적(㎡)	이동일자	이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원인	변동내역

토지부분 소유자 연혁					
변동일자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등기원인일자	대표자(관리자) 성명	대표자(관리자) 주소
변동원인	등록번호		등기원인	대표자(관리자) 주민등록번호	

[illegible]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토지이용계획 확인도면 [출력축척		]	지적(임야)도 [등록축척 / 출력축척				]

* 이 도면으로는 측량,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이 도면으로는 지적측량을 할 수 없습니다.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장번호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건축물 현황도면 [평면도]						

도면축척		도면작성자	
------	--	-------	--

고유번호		부동산종합증명서(토지,집합건물)	건축물 명칭			
소재지			건축물 동명칭		호명칭	

안내사항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규정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입니다.
- ※ 구획정리(경지정리/토지개발사업/지적재조사)사업 시행중인 토지입니다.
-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규정에 의해 토지소유자를 복구할 토지입니다.
- ※ 해당 토지에 건축물은 "위반 건축물"입니다.

토지이용계획도면 범례

유의사항

[토지이용계획]

1.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제9조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해 드리는 것으로서 지역·지구·구역 등의 명칭을 쓰는 모든 것을 확인해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2.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는 경우로서 「철도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등과 같이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드리지 못 할 수 있습니다.
 3.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 8조 제 3항 단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 시 지형도면 등의 고시가 곤란한 경우로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시행령」 제 7조제 4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형도면 등의 고시 전에 해당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해 드리지 못 합니다.
 4. "확인도면"은 해당필지에 지정된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참고 도면으로서 법적효력이 없고, 측량이나 건축설계도면 등 그 밖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 제한내용은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에 규정된 내용을 그대로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만 제공되며, 신청 토지에 대하여 제공된 행위 제한 내용외의 모든 개발행위가 법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 지역·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은 신청인이 확인을 신청한 경우에만 기재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담당과를 방문하여 토지이용과 관련한 계획을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부동산종합증명서]

- ※ 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등 부동산공적장부 정보를 전자적으로 통합·발체하여 작성된 것으로 개별 부동산공적장부의 항목 중 일부는 출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등기 특정 권리사항]

1. 등기 특정 권리사항은 등기기록 중 특정권리만 표시한 것으로 일부 표시되지 않은 권리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기기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가등기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소유권이전담보가등기 및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근)저당권·질권설정 청구권 가등기 만에 관한 것입니다.

지명(제정·변경·기타) 보고서

번호	심의 종류	지명 종류	(시, 행정구역, 읍, 도, 군, 면, 리)	위치		현 지도 표기내용	현재 호칭되는 지명		최초 심의 요청 지명			지명위원회 의결					
				경도	위도							○○시·군·구			○○시·도		
									한글	한자	영문	한글	한자	영문	한글	한자	영문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지명 결정(제정·변경·기타)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시·도지사

첨부서류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 3. 지명 조정 의견서 1부(지명 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	--

지명(제정·변경·기타) 요청서

번호	심의 종류	지명 종류	행정구역 (시, 도, 군, 읍, 면, 리)	위치		현 지도 표기내용	현재 호칭되는 지명		최초 심의 요청 지명			지명위원회 의결					
				경도	위도							○○시·군·구			○○시·도		
												한글	한자	영문	한글	한자	영문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한글										
							한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의2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따라 지명 결정(제정·변경·기타)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시·도지사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
|------|---|
| 첨부서류 |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영 제95조의2제1항제5호는 생략 가능)
3. 지명 조정 의견서 1부(지명 조정이 있는 경우만 해당)
4. 연 제9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
|------|---|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 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시		
재심의 청구기관	기관명 (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 소			
	전자우편 (e-mail)			
재심의 청구 제목				
재심의 청구 취지 및 이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9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지명의 결정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재심의 청구기관의 장

직인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재심의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u>기본도의 지정</u>) 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기본도로 지정할 지도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여 제작된 지형도 중 규격이 일정 하고 정확도가 통일된 것으로서 축척이 최대인 것이어야 한다.	제15조(<u>국가기본도의 지정</u>) ---- ----- ----- ----- -----.
제49조(<u>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u>) 영 제38조에 따른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재발급받 으려는 자는 별지 제42호서식을 작성하여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9조(<u>측량업등록증 등의 재발급 신청</u>) 법 제44조제4항----- ----- ----- ----- -----.
제72조(<u>지적공부의 복구자료</u>)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지적공부 의 복구에 관한 관계 자료(이하 “복구자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2조(<u>지적공부의 복구자료</u>) -- ----- ----- ----- -----.
1. ~ 3. (생 략)	1. ~ 3. (생 략)
4. <u>부동산등기부 등본 등 등기</u>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u>부동산등기부</u> ----- -----
5. ~ 7. (생 략)	5. ~ 7. (생 략)
제99조(<u>지명위원회의 보고</u>) ① · ② (생 략)	제99조(<u>지명의 제정·변경·폐지 등 보고</u>)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9조의2(<u>지명결정 요청</u>) ① 영

<신 설>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 신고) 법 제93조제5항에 따른	제95조의2에 따라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명의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2 서식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지명 세부내용 조사표 1부 2. 회의록 사본 1부(영 제95조의2제1항제1호는 생략할 수 있다) 3. 지명 조정 의견서 1부(지명 조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영 제95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임을 입증하는 서류 1부 제99조의3(지명 재심의 청구) 법 제91조의3제1항에 따라 재심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6호의3의 재심의 청구서에 청구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6조(성능검사대행자의 폐업 신고) 법 제93조제6항-----
---	---

폐업신고는 별지 제93호서식에 따른다.	----- -----.
<u>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법 제93조제7항에 따른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4호서식과 같다.</u>	<u>제107조(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의 재발급신청서) 법 제93조제3항에 따라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증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94호서식을 작성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u>